

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(내국법인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관리번호
------	------	------

1. 신청인 인적사항

①법인명	②사업자등록번호
③대표자 성명	④업태·종목
⑤소재지	

2. 사업연도

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~ 년 월 일	⑦직전전사업연도 년 월 일 ~ 년 월 일
⑧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~ 년 월 일	

3.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

⑨결손금액	⑩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(⑪+⑫)	⑪직전전사업연도 : ⑫직전사업연도 :
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4.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

구 분	직전전사업연도	직전사업연도	합 계
⑬과세표준			
⑭세 율			
⑮산출세액			
⑯공제감면세액			
⑰차감세액(⑮-⑯)			

5. 환급신청세액 계산

⑱법인지방소득세액		
⑲차감할 세액[$\{⑬ - (⑪, ⑫)\} \times \text{세율}$ [$⑲ \geq (⑮ - ⑰)$]]		
⑳환급신청세액(⑱-⑲)($⑳ \leq ⑰$)		

6.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

㉑ 예입처 은행 (본)지점	㉒ 예금종류	㉓ 계좌번호
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

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8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 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4서식)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작성 방법

※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.

1. ⑨ 결손금액: 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.
2. ⑩~⑫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4서식의 ⑥~⑧ 기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.
3. ⑬ 과세표준 및 ⑭ 공제감면세액: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
4. ⑭・⑮란의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.
5. ⑮ 산출세액: 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⑯ 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지방소득세액: ⑭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(⑮ 산출세액의 금액)을 옮겨 적습니다.
7. ⑰ 차감할 세액
 - 가. ⑬ 과세표준에서 ⑪, ⑫란의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원미만 금액은 절사)을 적습니다.
 - 나. ⑭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⑪, ⑫란의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⑭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.
8. ⑱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9. ㉑ 예입처, ㉒ 예금종류, ㉓ 계좌번호란에는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
※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과(☎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